

의안 번호	49
----------	----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2. 11. 25.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나. 의안번호 : 제49호

다. 제출일자 : 2022. 11. 14.

라. 회부일자 : 2022. 11. 17.

2. 제안이유

가.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초등단계의 아동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방과 후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며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적 돌봄시설로

나.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호점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의 다양한 연계자원을 활용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시설현황 :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호점

나. 위탁기간 : 2023.01.01.~2027.12.31.(5년)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근거 위탁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함.

다.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선정(2022. 12. 예정)

라. 수탁자격: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 비영리법인임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탁기관으로 가능

라. 위탁사업의 범위

-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업무 일체

- 우리동네키움센터 시설물 및 재산 관리

- 기타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5. 검토의견

□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호점’(이하 “키움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키움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계약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주요내용

- 2022년 12월 31일자로 키움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 위탁법인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5년간 (2023. 01. 01. ~ 2027. 12. 31.) 재계약하려는 것임.
-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¹⁾에 따라 초등학생 방과 후, 방학 중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현재 성북구는 총 11개소가 운영 중이며, 위탁대상 현황과 소요예산은 다음과 같음.

<키움센터 성북1호점 현황 및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시 설 명 (운 영 체)	주 소	대 표 (시설장)	정원	현원	위탁운영 기간	운영예산	비고
우리동네 키움센터 성북1호점 (사단법인 한국청소년 교육연구원)	돌곶이로37 길324 (장위동)	정성현 (손민경)	29	29	2021.11~ 2022.12.31	12,348천원(월) (국시구)	- 시설장: 1인 - 종사자: 3인 - 월기본운영비: 1,550천원(국시구) - 월인건비: 약 10,798천원(국시비)

1)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 ‘키움센터’운영사무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2)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고,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3)에서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키움센터’ 재계약 추진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민간위탁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탁자 선정심의회위원회를 거쳐 재계약을 추진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법규 절차대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으로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돌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돌봄시설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3) 「아동복지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성북구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현황

□ 시설현황

(2022. 11월 현재)

시설명	센터장	행정동	주소	면적 (㎡)	정원 /현원	위탁단체	위탁기간
1호점	손민경	장위1동	돌곶이로37길 32-4	94	29/29	사단법인 한국청소년 교육연구원	2021.01.01. ~2022.12.31
2호점	선종복	석관동	화랑로 214, 래미안석관아파트 내	269	35/16	사단법인 한국청소년 교육연구원	2020.12.01~ 2025.11.30
3호점	장현옥	동선동	아리랑로 27-3, 2~3층	149	30/34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아이	2021.09.01~ 2026.08.31
4호점	이화재	장위2동	장위로40다길 10	187	30/30	사단법인 미래복지경영	2021.03.01. ~2026.02.28
5호점	김정윤	정릉2동	아리랑로19다길 12	194	30/23	사단법인 희망동지 나뭇	2021.09.01~ 2026.08.31
6호점	이정민	돈암2동	아리랑로 89, 일신건영아파트 내	153	30/30	사단법인 해피피플	2021.10.01~ 2026.02.28
7호점	안명자	길음1동	길음로 118, 404-101 이편한세상아파트 내	84	20/21	사단법인 꿈의아이들	2021.10.01~ 2025.05.31
8호점	신호영	길음2동	송인로 50, 센터피스아파트 내	106	26/32	사단법인 꿈의아이들	2021.03.01. ~ 2025.8.31
9호점	김한울	정릉4동	보국문로16길 2, 2층	115	23/27	사단법인 해피피플	2021.03.01~ 2025.06.30
10호점	이은영	종암동	종암로25길 29, 마을사회적경제센터 2층	238	30/25	사회적협동조합 함께살이성북	2021.09.01~ 2026.08.31
11호점	조혜은	삼선동	보문로29길 101, 3층	132	30/11	사단법인 꿈의아이들	2022.07.01~ 2027.06.30